

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지출보고서



군 산 시

목 차

I . 개	요	1										
II . 경	과	2										
III . 기	대	효	과	2								
IV . 지	출	보	고	서	작	성	기	준	3			
V . 지	출	보	고	서	활	용	4					
VI . 08년	지	출	보	고	서	시	범	편	성	결	과	5
○ 세	목	별	지	방	세	지	출	개	요	5		
○ 기	능	별	지	방	세	지	출	개	요	5		
○ 지	방	세	지	출	보	고	서	6				

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지출보고서

I 개 요

- 「지방세지출」은 비과세·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재정지출(직접지출)에 대응하여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
- 「지방세지출예산제도」는 지방세지출 내역(비과세·감면내역)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예산(재정지출)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·통제하는 제도
- 2008년 10월 6일 현재 입법예고 중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「지방세지출보고서」작성 및 의회제출 의무를 명시

※ 【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】

제5조(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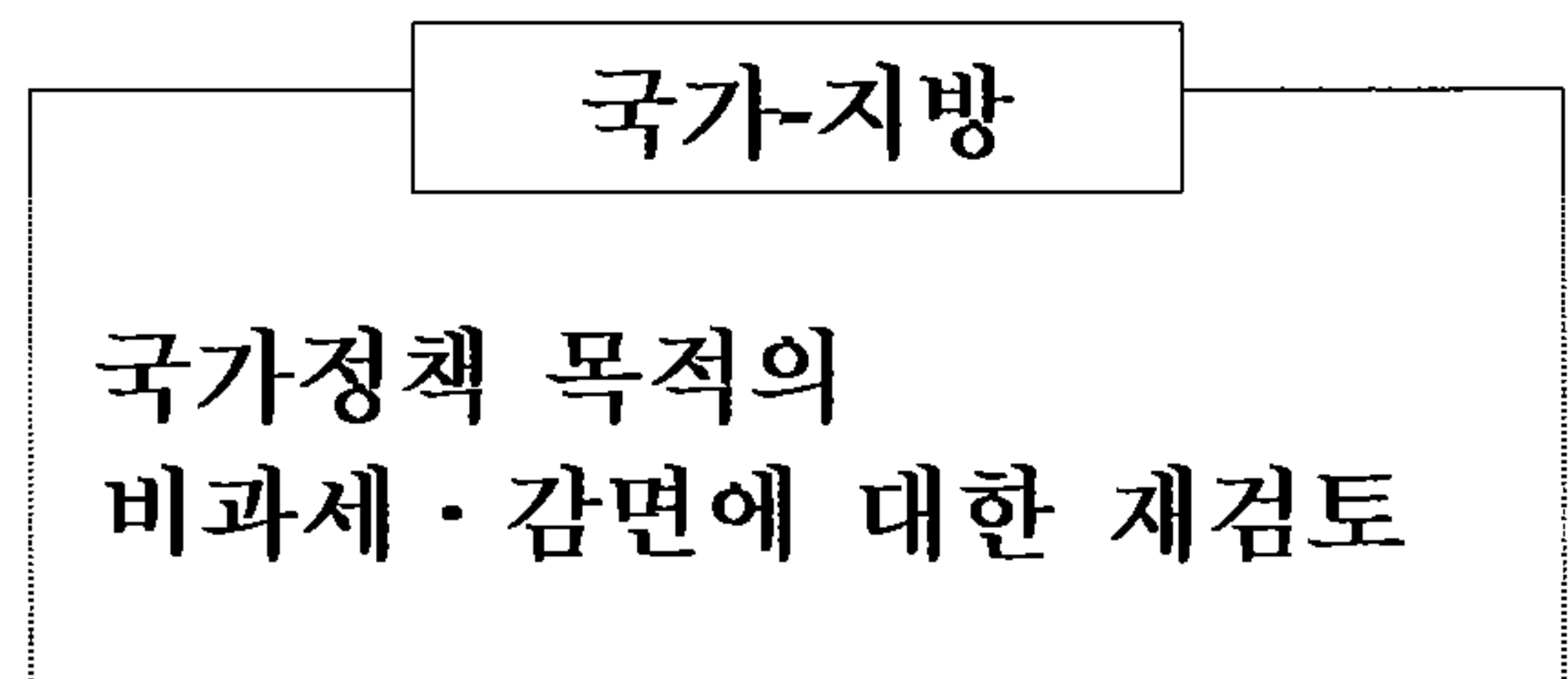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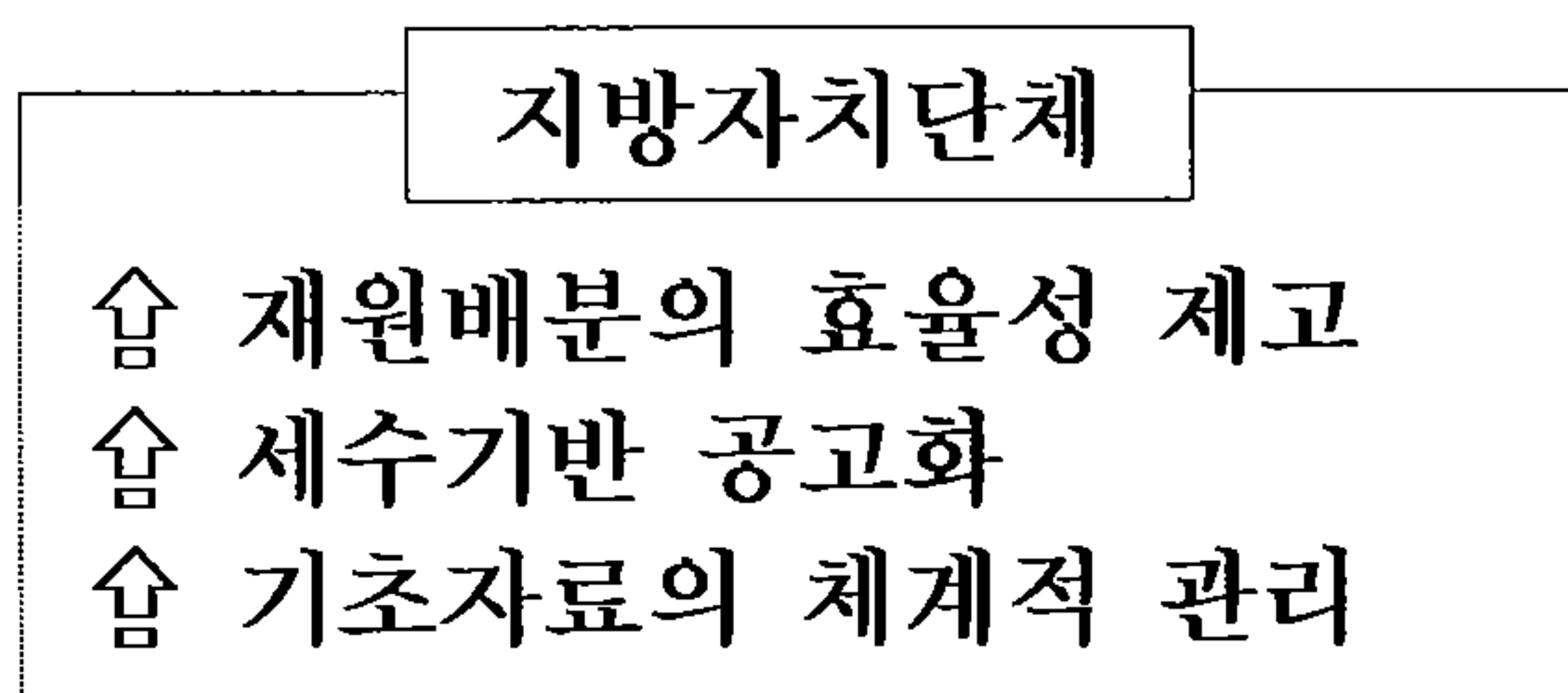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(이하 “지방세지출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부칙 제2조(지방세지출보고서)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0년도부터 적용한다.

II 경과

- 2008. 2월 :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기관 선정
- 2008. 2월 ~ 6월 : '07년도 결산분 비과세·감면 현황 일제정비
- 2008. 6월 : 2007년도 결산분 지출보고서 시범편성
- 2008. 10월 : 2008년도 추계분 지출보고서 시범편성(9월기준)

III 기대효과



○ 기초자료의 체계적 관리

- 국·공유재산 등 현재 비과세·감면 총액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

○ 세수기반 공고화(broad base, low rate)

-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방세지출을 최소화하고 '넓은 세원 낮은 세율' 체계의 기반 마련

○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

-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평가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, 지원효과를 극대화

○ 국가정책 목적의 비과세·감면에 대한 재검토

- 국유재산에 대한 비과세, 국가정책 목적의 감면 등에 대한 재검토 기회

로 활용(zero-base budgeting)

○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역량강화

- 비과세·감면이 갖는 정책적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불요불급한 세제지원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 강화 활용

IV 지출보고서 작성기준

○ 작성주체 : 자치단체가 각각 자체 과세권에 따라 작성

○ 작성대상

▷ 대상세목 : 전체 세목

▷ 회계연도 : 직전연도(결산액) + 당해연도(추계액)

※ 추계시점 : '08. 9. 30일 기준

※ 추계액 : 비과세·감면실적(9.30 이전) + 비과세·감면전망액(9.30 이후)

▷ 지출유형 : 비과세·감면 전체

▷ 근거법령을 기준으로

- 「지방세법」상 세목별 비과세조항 및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전체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지방세 감면조항
- 자치단체별 「감면조례」 전체 조항(표준조례 + 개별조례)

○ 보고서 서식

▷ 비과세·감면 내역을 세제지원 대상 또는 취지에 따라 139개의 항목으로 정리하고 세목별 비과세·감면액을 기재

▷ 비과세·감면 항목은 세출예산,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·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(13개 분야 59개 부문)로 분류

V | 지출보고서 활용

○ 의회제출

- ▷ 자치단체는 매년 11월 <지방세지출보고서> 를 의회에 의무제출 ('10년 이후)
 -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예산안과는 달리 의회 승인사항이 아님

○ 재정공시

- ▷ 자치단체는 매년 8월 직전연도 및 전전연도 지방세지출액을 주민에게 공시('10년 이후)

○ 재정분석

- ▷ 행정자치부는 관련지표를 신설하여 매년 10~11월 재정분석 '10년 이후 '지방세지출비율' '지방세지출증감율'등으로 지표 변경

VI 08년도 지출보고서 시범편성 결과

□ 세목별 지방세지출 개요

(단위:천원)

구 분	'07년(결산)	구성비	'08년(추계)	구 성 비	비교증감	증 감 율
시세계	22,552,963	100%	25,637,923	100%	3,084,960	13.7%
주민세	37,761	0.2%	41,504	0.2%	3,743	0.0%
재산세	12,748,488	56.5%	15,841,459	61.7%	3,092,971	13.7%
자동차세	3,620,133	16.0%	3,020,625	11.8%	△ 599,508	△ 2.7%
주행세	1,750,766	7.8%	1,995,871	7.8%	245,105	1.1%
도시계획세	2,817,489	12.5%	3,145,697	12.3%	328,208	1.5%
사업소세	1,578,326	7.0%	1,592,767	6.2%	14,441	0.1%

□ 기능별 지방세지출 개요

(단위:천원)

분야별	'07년(결산)	구성비	'08년(추계)	구성비	비교증감	증감율
총 계	22,552,963	100%	25,637,923	100%	3,084,960	13.7%
010 일반공공행정	4,722,076	20.9%	5,959,559	23.3%	1,237,483	5.5%
020 공공질서 및 안전	4,861	-	924	-	△ 3,937	-
050 교육	1,762,391	7.8%	1,843,308	7.2%	80,917	0.4%
060 문화 및 관광	523,738	2.3%	637,048	2.5%	113,310	0.5%
070 환경보호	270	-	294	-	24	-
080 사회복지	1,294,802	5.7%	1,429,876	5.6%	135,074	0.6%
090 보건	83,338	0.4%	82,911	0.3%	△ 427	-
100 농림해양수산	1,874,422	8.3%	2,137,760	8.3%	263,338	1.2%
110 산업·중소기업	536,595	2.4%	699,302	2.7%	162,707	0.7%
120 수송 및 교통	2,371,605	10.5%	1,707,912	6.7%	△ 663,693	△ 2.9%
140 국토 및 지역개발	3,033,273	13.5%	3,443,442	13.4%	410,169	1.8%
150 과학기술	-	-	-	-	-	-
900 기타	6,345,592	28.2%	7,695,587	30.0%	1,349,995	5.9%

<지방세 지출보고서>

일반공공행정(010)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
		'07년(결산)	'08년(추계)
	일반공공행정(010)	4,722,076	5,959,559
	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	3,811,475	5,131,672
	-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·등록·면허·주민(균등할)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·지역개발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6①, §126①, §162, §174①1, §185①, §238의2①, §242①, §245①, §255①)		
	- 지방자치단체가 국방·경호·경비·교통순찰 및 소방, 환자수송·청소·오물수거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96의4 1·2호)	3,900	3,900
1		2,636,228	3,747,261
		6,059	6,413
		879,838	1,085,798
		285,450	288,300
	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		
	-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·등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6②, §126②)		
2			
	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		
	-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		
3		14,944	15,018
		11,919	7,960
		3,025	7,058

	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부과세(지방세법 §185②, §238의2①, §242①)	공동시설세		
		-		
	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	소 계		
4	-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55② 전단)	지역개발세		
		-		
		-		
	정당에 대한 비과세	소 계		
5	- 정당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면허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7 1호, §127①1, §163①, §186 1호, §238의2①, §242①, §245의2①1)	취득세		
		등록세		
		면허세		
		재산세		
		도시계획세		
		공동시설세		
		사업소세		
	정당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	소 계		
6	- 정당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55② 후단)	지역개발세		
		-		
		-		
		소 계	6,933	8,365
	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	취득세		
7	-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·등록·면허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7 2호, §127① 2호, §163②6, §186 2·5호, §238의2①, §242①, §245의2①2)	등록세		
		면허세		
		재산세	6,108	7,200
		도시계획세	825	1,165

		공동시설세		
		사업소세		
		소 계	744,123	650,590
		등록세		
		재산세	566,181	492,593
		도시계획세	177,942	157,997
		-		
		-		
		소 계	144,601	153,914
		취득세		
		등록세		
		재산세	33,254	40,978
		도시계획세	18,882	20,009
		공동시설세		
		사업소세	92,465	92,927
8	<p>사유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부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부과세(지방세법 §127①5호) -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·묘지에 대한 재산·도시계획세 부과세(지방세법 §186 4호, §238의2①, §242①) 			
9	<p>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공사 또는 공단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전동차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세 면제,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(조례) -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사업소세 면제,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(조례) 			

공공질서 및 안전(020)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
		'07년(결산)	'08년(추계)
	공공질서 및 안전(020)	4,861	924
	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		
10	- 한국갱생보호공단 및 갱생보호사업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지방세법 §271③)		
	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		
11	- 민영교도소를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세 면제(지방세법 §271④)		
	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	4,861	924
12	- 천재·지변·소실·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·선박·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면허·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8, §127의2①, §163②5, §196의4 5호)		
	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과세특례		
13	-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에 대한 재산·공동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86 7호 전단, §242①)		
	합 계	4,861	924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재산세		
	도시계획세		
	공동시설세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재산세		
	소 계	4,861	924
	취득세		
	등록세		
	면허세		
	자동차세	4,861	924
	-		
	소 계		
	재산세		
	공동시설세		
	-		

	<p>- 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파주시 020-025)</p>			
--	---	--	--	--

교 육(050)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
		'07년(결산)	'08년(추계)
	교 육(050)	1,762,391	1,843,308
	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	1,295,214	1,307,773
14	-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·등록·면허·주민(균등할)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·지역개발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6①, §126①, §162, §174①1, §185①, §238의2①, §242①, §245①, §255①)	4,300	4,250
		691,765	795,529
		295,012	200,511
		304,137	307,483
15	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		
	- 교육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·등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6②, §126②)		
16	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		
	-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85②, §238의2①, §242①)		
17	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		

	- 교육자치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부과세(지방세법 §255② 전단)	지역개발세		
		-		
		-		
	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	소 계	459,316	521,246
	-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면허·주민(균등)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세 부과세(지방세법 §107 1호, §127①·3 전단, §163①, §174①5, §186 1호, §238의2①, §242①, §245의2①1)	취득세		
		등록세		
		면허세		
		주민세	1,000	1,000
	- 산업체부설 중·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세 면제(지방세법 §272①2, §272⑤ 후단, §272⑥)	재산세	186,520	238,923
		도시계획세	42,546	52,073
		공동시설세		
		사업소세	229,250	229,250
		-		
		-		
	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부과세	소 계		
		지역개발세		
		-		
		-		
	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	소 계	934	1,674
	-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면허·주민(균등)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세 부과세(지방세법 §107 1호, §127①1, §163①, §174①5, §186 1호, §238의2①, §242①, §245의2①1)	취득세		
		등록세		
		면허세		
		주민세		
		재산세	547	1,083
		도시계획세	387	591
18	- 교육자치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부과세(지방세법 §255② 전단)			
19	-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부과세(지방세법 §255② 후단)			
20	-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면허·주민(균등)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세 부과세(지방세법 §107 1호, §127①1, §163①, §174①5, §186 1호, §238의2①, §242①, §245의2①1)			

	받은 비영리시설에 대한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조례)	공동시설세 사업소세		
21	<p>평생교육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생교육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55② 후단) 	<p>소 계</p> <p>지역개발세</p> <p>-</p> <p>-</p>		
22	<p>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 인·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지방세법 §288②) -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88⑤)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 <p>도시계획세</p> <p>공동시설세</p> <p>-</p>	6,927	12,615
			4,506	9,502
			2,421	3,113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 인·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공시설세 면제(지방세법 §288②) - 도서관·박물관·미술관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공시설세 면제(조례) - 인사동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세 50% 감면 (개별감면조례, 서울특별시·종로구, 060-061) - 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세 50% 감면 (개별감면조례, 서울특별시·종로구, 060-061) -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의한 공연장·화랑·조각공원에 대한 취득·등록·도시계획·공공시설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서울특별시, 060-061) 	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 <p>도시계획세</p> <p>공공시설세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소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 <p>담배소비세</p> <p>-</p> <p>-</p>
27	<p>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·등록세 50% 감면 (지방세법 §277①) -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% 감면 (지방세법 §277조의2①)(‘09신설) 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증과 배제,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 등록세 증과 배제(지방세법 §277조의2②)(‘09신설) -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·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세 50% 감면(조례) -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·반출하는 경우,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면제(조특법 §121의13①③) -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세 50% 감면,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(개별감면조례, 전라북도·정읍시, 060-062) -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,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(개별감면조례, 전라남도·해남군, 060-062) -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세 50% 감면,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(개별감면조례, 전라북도·정읍시, 060-062) - 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,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(개별감면조례, 제주특별자치도, 060-062) -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보편관광단지 및 감포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재산세 	-		
--	--	---	--	--

	<p>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경주시, 060-062)</p> <p>「관광진흥법」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30% 이상이고, 2007.1.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 파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은 20%, 특급호텔 이외 호텔은 10%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재산세 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서울 종로구·중구·용산구·성동구·광진구·동대문구·중랑구·성북구·강북구·노원구·은평구·서대문구·마포구·강서구·금천구·영등포구·서초구·송파구·강동구·강남구, 060-062)</p>		
28	<p>체육진흥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 인·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세 면제(지방세법 §288②) - 한국마사회 부산·경남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 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(부산·경남 도내 장외발매소 발생분 제외) 세액의 20% 경감(개별감면조례, 부산광역시·경상남도, 060-063) -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이 경륜장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 세액의 20% 경감(개별감면조례, 부산광역시, 060-063) -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하여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륜장 본장(광명동 경륜장) 및 장외발매소분에 대한 레저세액의 50% 경감(개별감면조례, 경기도, 060-063)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 <p>도시계획세</p> <p>레저세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	2,410
29	<p>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</p>	<p>소 계</p>	2,917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」에 따른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등락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지방세법§288(19, 060-064)) - 사적지에 대하여 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부과세(지방세법 §186 4호, §238의2①, §242①) 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한 국보 등과 시·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, 시장·군수가 지정한 부동산, 「문화재보호법」 및 시·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재산·도시계획세 면제(조례) 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재산세 50% 감면(조례) -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4종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종로구, 060-064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- - - - -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,226 184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,902 15
--	--	--	--	---

환경보호(070)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
		'07년(결산)	'08년(추계)
	환경보호(070)	270	294
	환경자원공사에 대한 감면		
30	- 환경자원공사의 재활동가능자원 수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·재산세 50% 감면, 재활용촉진기술 개발·보급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86②)		
	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		
31	- 「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」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지방세법§288(19, 070-074)) -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90) -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서초구, 070-074)		
	해양오염방제조함에 대한 감면		
32	- 방제에 필요한 자재 등의 비축·대여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세 면제, 폐기물저장시설용 부동산 등에 등 취득·등록·재산세 50% 감면, 방제선박에 대한 취득·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86③)		
33	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		
		270	294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재산세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재산세		
	도시계획세		
	공동시설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270	294
	취득세		
	등록세		
	재산세	270	294
	-		
	소 계		

	<p>- 「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」(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)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고, 제6조에 따라 건축부문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라 5~20% 취득·등록세 감면(개별감면 조례, 서울특별시, 070-076)</p>	<p>취득세 등록세 - -</p>		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사회복지(080)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
		'07년(결산)	'08년(추계)
	사회복지(080)	1,294,802	1,429,876
	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	21,511	22,104
34	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(균등할) 비과세(지방세법 §174①4)	21,511	22,104
	장애인에 대한 감면	790,686	828,933
35	-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 1~4급) 장애인의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등 1대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자동차세 면제(조례)		828,933
	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면		
36	-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71②)		
	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		
37	-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조례) -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대표자가 취득하는 재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(조례)		
38	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	3,082	3,769
	-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세 면제,		

	<p>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73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·등록·재산세 면제, 자산운용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·등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73②) -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취득·등록세 면제(지방세법 §273④ 일부) 	<p>등록세</p> <p>재산세 3,082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소 계 31,483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면허세</p> <p>주민세 2,800</p> <p>재산세 20,645</p> <p>도시계획세 8,029</p> <p>공동시설세</p> <p>사업소세</p> <p>소 계</p> <p>지역개발세</p> <p>-</p> <p>-</p> <p>소 계 41,977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 24,815</p> <p>3,769</p> <p>43,813</p> <p>5,800</p> <p>27,425</p> <p>10,588</p> <p>55,100</p> <p>33,705</p>
39	<p>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법인, 양로원·보육원·모자원·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,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면허·주민(균등)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7 1호, §127①·3 후단, §163①, §174①5, §186 1호, §238의2①, §242①, §245의2①1) 	
40	<p>사회복지법인·시설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법 등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55② 후단) 	
41	<p>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세 면제(지방세법 §272⑤ 일부) 	

	-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(표준감면조례)(09신설)	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소 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-	15,522 1,640 6,371 4,998 1,373 -	19,755 1,640 7,609 6,683 926 -
42	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- 노인정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지방세법 §271①) - 무료·실비노인복지시설 취득·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% 감면, 유료노인복지시설 취득·등록·재산세 50% 감면(조례)	소 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-	1,925 -	2,123 -
43	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- 스카우트 주관단체, 한국청소년연맹, 한국해양소년단연맹, 정부인·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지방세법 §288①4·5·6②) -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88③)	소 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-	1,925 -	2,123 -
44	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- 대한적십자사·법률구조공단·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지방세법 §288①2·3)	소 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-	1,925 1,210 715 -	2,123 2,123 -
45	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	소 계	18,346	25,088

	<p>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·등록세 면제(조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임대주택법」 §12의2① 단서의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세 50% 감면, 설립등기 대도시증과 배제(조특법 §119⑥4·⑦, §120④4) 	-		
52	<p>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(지방세법 §269⑥) - 대상주택 중 연간종합소득 1,200만원이하·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85㎡이하·3억원미만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% 감면(조례) <p>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사)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지방세법 §288⑥, 080-088) - (사)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(조례) -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제주특별자치도, 080-088) 	<p>소 계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 <p>-</p> <p>-</p> 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 <p>도시계획세</p> <p>공동시설세</p>		
53				

보 건(090)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
		'07년(결산)	'08년(추계)
	보건(090)	83,338	82,911
	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		
5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대학교병원, 서울대학교치과병원, 국립대학교병원, 국립암센터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, 사업소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87①4·5, §245의2①5) - 지방의료원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세 면제(조례) 		
	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		
5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. 단, 특별시·광역시·도청소재지의 경우 등록세 과세(지방세법 §287②) -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·등록·면허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7 1호, §127①1, §163①, §186 1호, §238의2①, §242①, §245의2①5) -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, 공수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63②6) 	82,940	82,511
		56,128	60,613
		26,812	21,898
56	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	398	400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73③)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, 재산세 25% 감면(지방세법 §273③, 090-092) 	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	<p></p> <p></p> <p>398</p>	<p></p> <p></p> <p>400</p>
57	<p>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구보건복지협회·한국건강관리협회·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지방세법 §287①1·2·3)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 <p>도시계획세</p> <p>-</p>	<p></p> <p></p> <p></p> <p></p> <p></p> <p></p>	<p></p> <p></p> <p></p> <p></p> <p></p> <p></p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전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(개별감면조례, 대전 유성구, 100-101) - 구 웅상읍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0.007%(‘07년도), 75% 감면(‘08년도), 50% 감면(‘09년도), 25% 감면(‘10년)(개별감면조례, 양산시, 100-101) -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·장재공업지역안의 토지로서 1990.8.11이전에 취득한 개인소유 자경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(개별감면조례, 경상남도 진주시, 100-101) -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·고시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동 지정·고시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고,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이연(개별감면조례, 보령시, 100-101) -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로서,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·고시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25% 감면 (개별감면조례, 경기 광주시, 100-101) 		
59	<p>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·농지확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(지방세법 §263①) -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-</p> <p>-</p>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·분합하는 임야 취득·등록세 면제, 99만㎡이하 보전산지 취득·등록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63② 중·후단) - 임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(지방세법 §267③ 일부) -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주행세 면제(조특법 §106의2①1 일부) 	등록세		
		사업소세		
		주행세	924,873	1,054,355
		-		
6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주행세 면제(조특법 §106의2①1 일부) 산림유전자원보호령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림유전자원보호령·보안령·채종령·시험령,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의 임야,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,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86 5호, §238의2①, §242①) 	소 계	34,984	40,843
		재산세	34,960	40,816
		도시계획세	24	27
		공동시설세		
6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-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67①) -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·공동시설세 면제(지방세법 §262②) -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취득세 면제, 어업권의 설정을 제외한 어업권에 관한 면허 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67②, §163②3) - 수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(지방세법 §267③ 일부) - 어업인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주행세 면제(조특법 §106의2①1 일부) 	소 계	10,868	11,100
		취득세		
		등록세		
		면허세		
65	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	재산세	9,204	9,204
		공동시설세		
		사업소세		
		주행세	1,664	1,896
		-		
		-		
		-		
		-		
		-		
		소 계	25	
		취득세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어조합법인의 영어·유통·가공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세 50% 감면,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(지방세법 §266⑦ 일부) -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주민세 면제(조특법 §67③) 	<p>등록세</p> <p>재산세 25</p> <p>주민세</p>	
66	<p>영농자금 등의 용자지원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의 조합 또는 금고가 농어업인·영농조합법인·영어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에게 용자하는 경우(중앙회 또는 연합회는 영농·영어·축산·산림개발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 한한다) 저당권설정등기 등록세 면제(지방세법 §264①) 	<p>소 계</p> <p>등록세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	92,984
67	<p>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66③)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염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,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세 25% 감면(지방세법 §266④)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염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사업소세 50% 감면, 업무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세 면제(지방세법 §266⑤⑥)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의 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,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세 면제(지방세법 §283①1) -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세 75% 감면(표준감면조례, 100-104)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 75,642</p> <p>사업소세 6,649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	82,291
68	<p>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</p>	<p>소 계</p>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등락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66①) 	취득세 등록세 재산세		
69	<p>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,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자, 수산물 가공업자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취득일부터 2년간 등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(조례) 	소 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-		6,625
70	<p>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고, 6개월 이상 비워 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(지방세법 §265) -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·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㎡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(조례) 	소 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- - -	7,446	6,625

산업·중소기업(110)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
		'07년(결산)	'08년(추계)
	산업·중소기업(110)	536,595	699,302
	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		
7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79) -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사업소세 면제,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,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·등록·공동시설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조례) 		
	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	11,779	36,896
7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세 면제,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(조특법 §119③, §120③, §121) -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세 대도시 종과 배제,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80③④) 	11,779	36,896
	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		
7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생산용 부동산 등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통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80②) -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재산세		
	도시계획세		

	<p>대하여 등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7⑤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세 면제,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(표준감면조례) -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,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,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(개별감면조례) 	<p>공동시설세</p> <p>사업소세</p> <p>-</p> <p>-</p>		
74	<p>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·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80①) -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2년 이내 등기시 등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50% 감면(조례)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		
75	<p>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로부터 인·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세 면제(지방세법 §288②) -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지방세법 §288④)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 <p>도시계획세</p> <p>공동시설세</p> 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	38,632	33,115
76	<p>연구·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세 면제(지방세법 §282) -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	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		33,115

	<p>연구·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(지방세법 §284⑤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험분석 및 연구용 담배,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흡연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(지방세법 §232①6·7) - 한국광기술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세 면제,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광주광역시·광주 북구·광산구, 110-112) 	<p>담배소비세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	
77	<p>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교육용 등 부동산 및 산업인력공단의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 (지방세법 §278⑤) - 행사·지경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법인합병에 대하여 법인등기 및 양수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세 면제(지방세법 §283①4)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	
78	<p>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벤처기업집적시설·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(지방세법 §280③) - 과밀억제권역 외의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2년 이내 등기시 등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50% 감면 등(조례) -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, 5년간 재산세 면제(조례)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 <p>도시계획세</p> <p>공동시설세</p> <p>사업소세</p> <p>-</p>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송도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,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인천광역시·00구, 110-114) - 광주테크노파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,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광주광역시·00구, 110-114) - 강원도 테크노파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,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강원도·00시·군, 110-114) - 전라남도 테크노파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,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전라남도·00시·군, 110-114) - 광주디자인센터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세 면제,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광주광역시·00구, 110-114) -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,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5년간 재산세 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서울특별시·00구, 110-114) - 경기도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,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5년간 재산세 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경기도·00시·군, 110-114) 		
--	--	--	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5년간 재산세 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경기도·화성시, 110-114) - 서귀포시 토평공업지구에 공장 등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동공업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·등록세 면제,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제주특별자치도, 110-114) - 강원도 00시·군과 경상북도 문경시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축·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·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7년간 재산세 면제, 그 후 3년간 재산세 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강원도 00 시·군, 경상북도 문경시, 110-114) 		
79	<p>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면제 후 2년간 50% 감면(일부사업은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% 감면, 조례로 15년 범위내 확대 가능) (조특법 §121의2④, 조례) -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 후 2년간 50% 감면(일부 사업은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% 감면, 조례로 15년 범위내 확대 가능) (조특법 §121의2⑤, 조례) - 사업양수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는 취득·등록·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50% 감면 후 2년간 30% 감면(조례로 10년 범위내 확대 가능)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347,564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492,001</p>

	(조특법 §121의2⑬3, 조례) - 사업양수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·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, 재산세 3년간 50% 감면 후 2년간 30% 감면(조례로 10년 범위내 확대 가능) (조특법 §121의2⑭4, 조례)	- - - - -		
80	수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- 수출용, 보세구역에서의 판매용 및 수출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(지방세법 §232①1·3·7)	소 계 담배소비세 - -		
81	법인·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-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은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(지방세법 §274①②, §275①) -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·이후 3년간 50% 감면(조례) - 성장관리권역·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 재산세 3년간 면제·이후 2년간 50% 감면(조례) - 수도권의 지역이전법인이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(조특법 §63조의2⑥)	소 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- - - -		
82	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감면 -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,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 및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재산세 50% 감면(조례)	소 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-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시장의 입점상인과 부동산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,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 및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재산세 50% 감면(조례) -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취득·등록세 면제(조례) -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서울특별시 자치구(강남구·서초구·광진구·용산구 제외), 110-114)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p>	
83	<p>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스공사가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지역난방공사가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81①) - 특별시·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지역난방사업자가 취득하는 열수송관 취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81②) -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대도시 종과 배제 및 50% 감면(조특법 §119⑤) -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인천광역시·경기도·충청남도·전라북도·전라남도·제주도, 110-115) -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강원도·충청북도, 110-115)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 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취득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등록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산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,588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,588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2,521</p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세 면제(개별 감면조례, 강원도·충청북도·제주도·강원도 00시군·제천시·충주시·음성군, 110-115) 			
84	<p>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광업권의 설정·변경 등 등록에 대하여 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63②2) -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으로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지방세법 §285①) - 광업진흥공사의 석재기능공헌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85③) - 광산근로자용 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(조례) - 해저조광권자에 대하여 주민세·사업소세 면제,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·재산·자동차세 면제(조특법 §140②1·4)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면허세</p> <p>주민세</p> <p>재산세</p> <p>자동차세</p> <p>사업소세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소 계</p>	<p>130,032</p> <p>119,642</p>	<p>119,642</p>
85	<p>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동차매업자 또는 건설기계매업자가 등록된 매매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96의4 5호) - 자동차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등록세 우대세율 1%, 건설기계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조례) -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96의4 5호) - 무역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·중고기계장비·중고선박 및 	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자동차세</p>	<p>130,032</p> <p>119,642</p>	<p>119,642</p>

	<p>선박투자회사·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·부동산투자회사·특수목적법인·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의 설립등기 및 설립후 5년 이내 자본 출자·증자 등기시 등록세 대도시 종과 배제(조특법 §119⑦)</p> <p>- 「선박투자회사법」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7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부산광역시·제주도, 110-111)</p>			
--	---	--	--	--

	<p>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·도시계획세 면제(지방세법 §289③·⑤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주행세 면제(조특법 §106의2①2) - 제주도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 등에 대하여 취득·지방교육·재산·공동시설세 면제(조특법 §120의15①·②) -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, 선박 및 기계 장비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50% 감면,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,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부산광역시·경상남도·부산 남구·중구·서구·동구·영도구·사하구·강서구, 120-124) -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, 선박 및 기계 장비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세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인천광역시·인천 중구·00구, 120-124) - 울산항만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, 선박 및 기계 장비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세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울산광역시·울산 00구·00구, 120-124) -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안에 입주하는 자가 항만관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5년간 50% 재산감면 (개별감면조례, 전라남도·광양시, 120-124) 	지방교육세	
92	<p>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기 또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,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84①) 	<p>소 계 취득세 등록세</p>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, 법인등기 등록세 50% 감면,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% 감면, 토지에 대하여 최종건설사업준공시까지 재산세 분리과세·재산세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인천광역시·인천 중구, 120-125) 	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		
93	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 취득·등록세 면제(지방세법 §268의2①) - 경형승합자동차 또는 경형화물자동차 취득·등록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68의2②) 	소 계 취득세 등록세		
94	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40만원, 등록세 100만원 한도로 취득·등록세 면제(지방세법 §268의3)(‘09신설) 	소 계 취득세 등록세		
95	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방조종자동차는 2009.12.31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, 기타 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는 2007.12.31까지 자동차세 50% 2008.12.31까지 자동차세 33% 감면(조례) - 서울특별시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1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서울특별시, 120-126) 	소 계 자동차세 - -	2,299,220 2,299,220	1,625,237 1,625,237
96	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성능시험용 부동산 및 자동차 검사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·등록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86①) -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	소 계 취득세 등록세 재 산 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		

	감면, 재산·도시계획·사업소세 5년간 50% 감면(조례)	-	
97	<p>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에 대한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조례) -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등 신규등록·이전등록·저당권설정등록 하는 경우 등록세 면제, 천연가스버스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(조례) - 사업용화물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 하는 경우 취득·등록세 면제(조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 - 계 - 취득세 - 등록세 - 재산세 - 도시계획세 - 공동시설세 - - 	
98	<p>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80⑤1) - 물류단지 안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80⑤2) 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른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재산세 5년간 50% 감면(조례) - 대구광역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내 입주하는 자가 취득·등록하는 입주 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% 감면(개별 감면조례, 대구광역시·대구 00구, 120-126) - 조합이 대구광역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중 도매단지내의 미분양된 토지 또는 계약 해지된 토지내에서 건축·분양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대구광역시·대구 00구, 120-126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 - 계 - 취득세 - 등록세 - 재산세 - - 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부권·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충청북도·충청남도·경상북도·청원군·연기군·칠곡군, 120-126) -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가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, 재산세 5년간 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전라남도·장성군, 120-126) 			
--	---	--	--	--

국토 및 지역개발(140)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
		'07년(결산)	'08년(추계)
	국토 및 지역개발(140)	3,033,273	3,443,442
	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		
9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수·수용·철거된 자가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가액 상당 취득·등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①, §127의2②) 		
	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		
1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가액 상당 취득·등록세 비과세 -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, §127의2②) 		
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		
10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가액 상당 취득·등록세 비과세,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9③, §127의2②) - 주택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가액 상당 취득·등록세 비과세 및 85㎡이하 주거용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,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 취득·등록세 비과세 및 대지조성용 부동산·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		
	합 계	3,033,273	3,443,442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세		
	-		
	-		
	-		
	소 계		
	취득세		
	등록		

	취득·등록세 면제(지방세법 §109③, §127의2②, 조례) -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85㎡이하 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(조례)	- - - - -		
102	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-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, 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·도시계획세 면제(지방세법 §289①⑤) -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(법률 제5904호)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공사완료 공공시까지 분리와세(개별감면조례, 대구 달성군·인천 계양구·남동구·서구, 140-142)	- - 소 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	217,473 4,280 164,681 52,792	2,784 1,496
103	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- 수자원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·등록세 면제, 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·도시계획세 면제(지방세법 §289②⑤)	소 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		
104	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-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·증축하는 경우 취득·등록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(수도권은 재산세 50% 감면) -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,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재산세 면제,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	소 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- - -	2,693,349 3,413,258 2,693,349 3,413,258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, 연구소기업, 외국인투자기업,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7년간 재산세 면제, 그 후 3년간 재산세 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대전광역시·유성구·대덕구, 140-143) - 강원도 전용공업지역중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북평지방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·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 면제, 5년간 면제·이후 3년간 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강원도·동해시, 140-143) 			
105	<p>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·이후 3년간 50% 감면(지방세법 §274의2, 조례) -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85㎡이하의 경우 취득·등록세 면제, 전용면적 102㎡이하의 경우 취득·등록세 75% 감면, 전용면적 135㎡이하의 경우 취득·등록세 62.5% 감면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 <p>-</p>		
106	<p>기업도시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15년간 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 후 3년간 50% 감면(조특법 §121의17③, 조례)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 <p>-</p>		
107	<p>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		

	<p>사업시행자로부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부산광역시, 140-14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원도안에서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율 4% 적용(개별감면조례, 강원도, 140-142) - 제주특별자치도안에서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율 2% 적용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별장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1% 적용, 재산세의 세율은 「지방세법」 제188조제1항 제3호나목(별장이외의 주택 세율) 적용(개별감면조례, 제주특별자치도, 140-142) - 제주특별자치도안에서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율 2% 적용, 재산세 3년간 25% 감면(개별감면조례, 제주특별자치도, 140-142) - 제주특별자치도안에서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·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2% 적용,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「지방세법」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 0.25% 적용,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25%를 경감한 후 「지방세법」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(3) 0.2% 적용(개별감면조례, 제주특별자치도, 140-142) 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,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등기하는 		
--	--	--	--

	<p>경우 등록세 면제, 사업시행자가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관광단지·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,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종합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최초로 신축하는 경우 그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(개별감면조례, 제주특별자치도, 140-142)</p> <p>-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사실상 착공한 후 부도·자금사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2006.10.1일 현재 건축공사 중단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이를 매수하여 2009.12.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·등록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제주특별자치도, 140-142)</p>			
108	<p>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개발에 대한 감면</p> <p>-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약정비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100㎡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(조례)</p>	<p>소 계 21</p> <p>재산세 21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		
109	<p>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</p> <p>-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% 감면, 도시계획세 면제(조례)</p> <p>-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조례)</p> <p>- 「철도안전법」에 의한 철도보호지구 안의 토지 재산세 50% 감면(조례)</p>	<p>소 계 122,430</p> <p>재산세 106,936</p> <p>도시계획세 15,494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		<p>25,904</p> <p>13,540</p> <p>12,364</p>
110	<p>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</p> <p>-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출자한</p>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		

	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대도시 안에 설립하는 법인등기 등록세 중과 배제(지방세법 §283②)	등록세 - -		
111	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-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60㎡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(지방세법 §269②) -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60㎡이하 5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(조례)	소 계 취득세 등록세 - - -		
112	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대한 감면 -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69⑤)	소 계 취득세 등록세 - -		
113	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-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우대세율 0.15%(조례) - 하수공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수금대금을 주 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·등록세 면제(조례)	소 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- -		

과학기술(150)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
		세 목	'07년(결산) '08년(추계)
	과학기술(150)	합 계	
		소 계	
		취득세	
		등록세	
		재산세	
		도시계획세	
		공동시설세	
114	<p>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</p> <p>- 「과학관육성법」에 의한 과학관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조례)</p>		

기 타(900)

연번	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	지방세지출액(단위: 천원)	
		세 목	'07년(결산) '08년(추계)
	기 타(900)	합 계	7,695,587
		소 계	7,456,454
		취득세	
		등록세	
		면허세	
		주민세	4,450
		재산세	5,493,678
115	<p>국가에 대한 비과세</p> <p>- 국가에 대한 취득·등록·면허·주민(균등할)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·지역개발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6①, §126①, §174①1, §185①, §238의2①, §242①, §245①, §255①)</p> <p>- 국가가 국방·경호·경비·교통순찰 및 소방, 환지수송·청소·오물수거와</p>	합 계	6,345,592
		소 계	6,154,161
		취득세	
		등록세	
		면허세	
		주민세	4,250
		재산세	4,454,884
		합 계	7,456,454

	도로공사, 우편·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96의4 1·2·5호)	자동차세	11,851	11,286
		도시계획세	1,081,941	1,339,191
		공동시설세		
		사업소세	601,235	607,849
		지역개발세		
		소 계		
		취득세		
		등록세		
		-		
		소 계	171	295
		재산세	171	293
		도시계획세		2
		공동시설세		
		소 계		
		지역개발세		
		-		
		-		
		소 계		
		취득세		
		등록세		
		-		
		소 계		
		담배소비세		
		-		
		-		
116	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-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·등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6②, §126②)			
117	국가가 사용하는 공용·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-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185②, §238의2①, §242①)			
118	국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- 국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 (지방세법 §255② 전단)			
119	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- 「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에 대한 취득·등록세 면제(조특법 §119①1, §120①1)			
120	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면세 - 국군·전투경찰·교정시설경비교도에 납품하는 담배 및 국가원수의 행사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32①2 전단, §232①7)			

121	<p>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·등록·주민(균등할)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06①, §126①, §174①2 전단, §185①, §238의2①, §242①, §245② 전단) - 주한외교기관,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96의4 5호)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주민세</p> <p>재산세</p> <p>자동차세</p> <p>도시계획세</p> <p>공동시설세</p> <p>사업소세</p> <p>-</p>	<p>12,299</p> <p>11,814</p>
122	<p>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·자동차세·사업소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74①2 후단, §196의4 5호, §245② 후단) 	<p>소 계</p> <p>주민세</p> <p>자동차세</p> <p>사업소세</p>	
123	<p>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(지방세법 §174①3) 	<p>소 계</p> <p>주민세</p> <p>-</p> <p>-</p>	
124	<p>주한외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면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담배 및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비과세(지방세법 §232①2 후단, §232①7) 	<p>소 계</p> <p>담배소비세</p> <p>-</p> <p>-</p>	
125	<p>주한미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한주택공사의 주한미군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면제, 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69④)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·등록에 대하여 등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8 3호) - 정부가 5할 이상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의 개정·폐지로 인하여 조직변경됨에 따른 취득·등록세 면제(조특법 §119①5, §120①4) 	- - - - - -		
131	<p>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전한 건축물의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10 5호) <p>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민법」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10 6호) - 행정구역 변경, 주민등록번호 변경,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·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·등록 등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8 4호) -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7①5) -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28 5호) -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§163②6) -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126조의2 3호) - 매년 1월 1일 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126조의2 8호) 	소 계 취득세 - 소 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	170,281 170,281	216,205 216,205
132		- - - - - - - - - - - -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면허세 부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126조의2 9호) -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부과세(지방세법 §196의4 5호) -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진가액 상당 취득·등록세 면제(지방세법 §268) 			
	<p>해외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부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등록세 부과세 (지방세법 §127①5) -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·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·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 판매하는 담배, 해외 합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·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·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,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(지방세법 §232①4·5·7②) 	<p>소 계</p> <p>등록세</p> <p>담배소비세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		
133	<p>시설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부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레저시설, 저장시설, 도크시설 및 점안시설, 도관시설, 급·배수시설,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부과세(지방세법 시행령 §201) 	<p>소 계</p> <p>공동시설세</p> <p>-</p> <p>-</p>		
134	<p>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별정우체국에 대한 취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·사업소세 부과세(지방세법 §107 5호, §186 3호, §238의2①, §242①, §245의2①4) 	<p>소 계</p> <p>취득세</p> <p>등록세</p> <p>재산세</p>	516	549
135			451	477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세 면제,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73⑥) 	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	65	72
136	<p>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협·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·재산세 면제, 사업소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72③) -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·등록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72④) - 새마을금고간 또는 신협간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,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세 면제(지방세법 §283①2·3) 	소 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세 - - - -	8,097	10,182
137	<p>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, 사업소세 50% 감면(지방세법 §272②) -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·등록·재산·도시계획·공동시설세 면제(지방세법 §288①7) - 전쟁기념사업회의 전쟁기념관 건립·운영용 부동산 재산·도시계획·사업소세 면제(조례) 	소 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- -		
138	<p>저축지원을 위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민세 면제(조특법 §89①) 	소 계 주민세 - -		

	<p>-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주민세 면제(조특법 §89의3①②)</p>	<p>- -</p>		
<p>139</p>	<p>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를 위하여 경호안정상 별도주거지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(개별감면조례, 서울 00구, 900-903) -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1,000분의 1.5 적용(개별감면조례, 서울 00구, 900-903) 	<p>소 계 재산세</p> <p>- - - -</p>		